

수원지방법원 2023. 2. 9 선고 2022나5216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3. 2. 9 선고 2022나52164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11. 24 선고 2019가단211934 판결

전문

원고(선정당사자)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결

담당변호사 김지현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현

담당변호사 최진용

변론종결 2022. 12. 8.

판결선고 2023. 2. 9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11. 24. 선고 2019가단211934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망 H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 선정자 E(망 H의 소송수계 부분에 한한다), T, U, V의 소를 각하한다.
2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E(망 H의 소송수계 부분 제외), F, G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E(망 H의 소송수계 부분 제외), F,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3. 선정자 E(망 H의 소송수계 부분에 한한다), T, U, V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하고,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E(망 H의 소송수계 부분 제외), F,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C이 피고를 대신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자별 금액을 지급한 행위를 각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(이하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‘원고’라고 하고, 통틀어 ‘원고들’이라고 한다)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일자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와 C 사이에 2016. 8. 29. 체결된 영업자산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, 원고 E, T, U, V의 소송수계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들 :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C이 피고를 대신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자별 금액을 지급한 행위를 각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일자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와 C 사이에 2016. 8. 29. 체결된 영업자산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

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(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,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).

나. 피고 :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이 사건 소 중 망 H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

망 H는 2019. 5. 1. 사망하였는데, 2019. 5. 21. 망 H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고, 이 법원에서 원고 E, T, U, V이 망 H의 소송을 수계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

그런데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고, 망 H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2019. 5. 작성되었으나 담당변호사 지정서 및 당사자선정서가 2019. 5. 21.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, 망 H가 사망하기 전에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. 따라서 망 H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고, 이에 터잡은 망 H의 소송수계인 원고 E, T, U, V의 소도 부적법하다.

2. 원고 A, E(망 H의 소송수계 부분 제외), F, G의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(다만 망 H에 대한 부분은 제외).

○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8행 ‘224,167,927원’을 ‘40,000,000원’으로, 제13면 제3행 ‘처분권주위’를 ‘처분권주의’로 각 고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망 H의 소송수계인 원고 E, T, U, V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원고 A, E, F, G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망 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, 제1심판결 중 원고 A, E, F, G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, E, F, G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A, E, F,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류창성, 판사 정희일, 판사 오연수

목 목

(단위: 원)

거래일	출금	비고
2016-11-01	200,000	대행비
2016-11-01	1,966,364	☐ 카드결제
2016-11-02	89,280	단말기요금
2016-11-02	18,190	단말기요금
2016-11-02	18,190	단말기요금
2016-11-02	18,410	단말기요금
2016-11-02	178,800	단말기요금
2016-11-02	89,400	단말기요금
2016-11-02	1,000,000	☐
2016-11-02	22,500	정수기
2016-11-05	1,600	콜라값
2016-11-07	3,579,692	본사식자제
2016-11-09	1,330,130	☐ 급여
2016-11-10	299,390	
2016-11-10	421,120	
2016-11-10	322,605	
2016-11-10	283,410	
2016-11-10	262,305	

2016-11-10	273,070			급여
2016-11-10	102,510			급여
2016-11-10	420,000			
2016-11-10	434,280			급여
2016-11-10	150,750			급여
2019-11-14	1,644,524			이자
2019-11-14	114,601			카드
2016-11-17	19,021			카드
2016-11-21	1,778			
2016-11-25	42,140			
2016-11-25	31,280			
2016-12-19	10,000			
합계	13,345,340			

선 정 자 명 단

1. A
2. F
3. G
4. E(망 H의 소송수계인)
5. 망 H의 소송수계인 T
6. 망 H의 소송수계인 U
7. 망 H의 소송수계인 V.끝.

